M - 113 - 2012

# 압력용기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6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ㅇ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광 길

ㅇ 개정자 : 안전연구실

# ○ 제·개정경과

- 1997년 7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에서 심의
- 1997년 8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2002년 11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의
- 2002년 12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2012년 4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#### ㅇ 관련규격 및 자료

- KS B6733(압력용기 기반규격)
- API 510(Pressure vessel inspection code)
- ASME SEC. VII DIV.1(Pressure vessels)
- NBIC(National board inspection code, march 31, 1998
-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  -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2장 제4절 제256조(부식방지)
- ㅇ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6 월 20 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압력용기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

### 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2장 제4절 제256조(부식방지)의 규정에 따라 화학설비중 압력용기의 보수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##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압력용기로 분류되는 탑조, 용기, 열교환기 등(이하 "압력용기"라 한다)의 보수에 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제조당시 적용한 규격(코드)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에 따라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해당규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.

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보수용접"이라 함은 압력용기 또는 기계부품 등의 일부 마멸된 부분을 다시 원래 상태가 되도록 덧살올림하는 용접을 말한다.
- (나) "국부 후열처리"라 함은 제품이 커서 노내에 넣을 수 없는 경우나, 현장 용접을 실시한 것으로서 노내 열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용접부 부근을 국부적으로 후열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
- (다) "클래딩(Cladding)"이라 함은 내식성이 적은 재료의 모재에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전 접촉부에서 완전히 판으로 붙인 것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

행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# 4. 일반사항

#### 4.1 보수팀 구성

ASME, NBIC 코드 등에 따라 제작된 압력용기의 보수시 보수팀의 구성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.

- (1) 미국기계학회 코드 심볼 스탬프를 사용할 수 있는 ASME 인증서(Certificate)를 보유한 자 또는 NBIC에서 정하는 R자격을 보유한 자
- (2) 압력용기의 소유주가 ASME 인증서를 보유한자와 동등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

#### 4.2 용접사의 자격

용접사는 KS B 6733(압력용기 기반규격)에서 정한 자격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 자이어야 한다.

#### 4.3 자격 기록

용접절차 및 용접수행자격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. 이 기록들은 용접을 시작하기에 앞서 검사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.

#### 5. 용접절차서 작성

#### 5.1 설계

- (1) 해당 제조 코드에 의해 능통하게 설계할 수 있는 자가 설계하여야 하며, 설계에는 응력계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(2) 설계시에는 제조 당시의 설계 및 제조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

M - 113 - 2012

한다. 이러한 자료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검사자, 규제기관 등과 보수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.

- (3) 계산서는 검사자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며, 향후의 설비관리를 위해 잘 보관하여야 한다.
- (4) 맞대기이음 용접은 전 길이에 걸쳐 완전 용입 되어야 한다. 부속품 자체의 보수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코드의 요구조건을 따라야 한다.

#### 5.2 재료

보수하는 데 사용하는 재료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코드를 따라야 하며, 재료는 보수하고자 하는 설비의 재료와 동일하거나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. 탄소함량이 0.35%를 초과하는 탄소강 혹은 합금강은 용접하여서는 안 된다.

#### 5.3 검사

용접 보수부에 대한 검사판정기준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코드에서 요구하는 비파괴검사 판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.

#### 5.4 압력시험

압력부의 모든 보수부위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.

- (1) 보수한 압력용기는 해당 명판상의 최고 허용압력으로 수압 또는 액압시험을 하여야 한다.
- (2) 보수시 교체된 압력부는 해당 명판상의 최고허용압력으로 시험하여야 한다.
- (3) 시험압력이 안전밸브의 설정압을 초과하는 경우, 장치 제조자의 조언에 따라 안전 밸브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후 시험하여야 한다.
- (4) 압력시험시의 온도는 다음에 따른다.

M - 113 - 2012

- (가) 소유주가 최저 시험온도에 관한 재료의 취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재료의 시험온도는 15℃ 이상으로 한다.
- (나) 소유주가 검사자에게 최대 시험온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한 재료의 시험온도는 50℃ 이하로 한다.
- (5) 유지시간은 최소 10분 이상이어야 하며, 검사자가 입회하여야 한다. 다만, 검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1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검사자가 검사하는데 충분한 시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.
- (6) 내용물이 금수품목인 경우나 수압 등의 액압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에 따를 수 있다.
- (가) 검사자, 규제기관, 소유주 등과의 합의 하에 NIBC에서 정하는 R자격 보유자가 공압으로 압력시험을 할 수 있다. 다만, 이때에는 해당 제작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조치 등의 구비사항을 만족해야 한다.
- (나) 압력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비파괴검사 등으로 압력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. 이 때에는 검사자, 규제기관, 소유주 등과의 합의 하에 행해야 하며, 검사자가 입회하여야 한다.

#### 6. 예열처리 및 후열처리

#### 6.1 예열처리

예열처리는 용접부의 갈라짐 방지, 기계적 성질개선, 용접에 의한 수축변형의 감소 및 용접부의 잔류응력 저감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.

- (1) 최초에 후열처리된 용기의 미소한 변경 혹은 보수에 대하여는 후열처리 대신 최소 150℃ 정도의 온도로 예열하여도 된다.
- (2) P-1강(일반탄소강)과 Mn-Mo강을 제외한 P-3(저합금강)으로 제작된 용기는 운전온도가 적정 연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할 때와 수압시험 및 시운전 기간 동안 과도한 위험성이 없을 때에는 대안으로서 최소 150℃의 예열을 실시하여도 된다.

#### 6.2 용접 후열처리 방법

용접 후열처리는 다음 방법중의 하나를 적용하여야 한다.

#### 6.2.1 가열로에서 1회 열처리

밀폐된 노안에서 부품을 한번에 가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노내의 분위기는 과도한 산화를 방지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, 제품 또는 부품에 화염의 직접접촉이 금지되어야 한다.

각종 금속의 후열처리 온도와 유지시간은 다음 <표 1>과 같다.

#### 6.2.2 가열로에서 1회 이상 열처리

제품의 크기가 커서 가열로에서 한 차례로 후열처리가 불가하고 열처리할 제품이나 부품에서 가열면적이 최소한 1.5m 이상 겹쳐지는 경우에는 노 내에서 1회이상 가열할 수 있다. 이 절차를 사용할 때 노 밖의 제품이나 부품의 일부분이온도변화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차폐되어야 한다.

#### 6.2.3 국부 후열처리

노 내 후열처리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를 만족할 때에는 모든 재료에 대하여 국부 보수용 360°밴드를 감아서 국부 후열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.

- (1) 적용방법 및 절차는 압력용기와 후열처리 요구사항에 경험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 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.
- (2) 절차의 적정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, 모재두께, 열화 열구배, 재료특성(경도, 성분, 강도 등)과 같은 적용인자, 후열처리로 인한 변화, 전 깊이 용접의 필요성과 후열처리 후에 표면 및 체적시험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. 추가로 압력용기의 국부 제한구간에서 열로 인해 발생하는 전체 및 국부 응력과 변형 등은 후열처리 절차를 평가하고 보완하는데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.

# <표 1> 각종 금속의 후열처리 온도와 유지시간

금 속 온도(℃) (독	유지시간(h) 판두께 25mm당)
(회주철) 430~500	5~1/2
(탄소강) C 0.35%이하, 19mm미만 ··········· 보통, 응력제거 불필요 C 0.35%이하, 19mm이상 ··········· 보통, 응력제거 불필요 C 0.35%이상, 12mm미만 ··········· 보통, 응력제거 불필요 C 0.35%이상, 12mm이상 ········· 보통, 응력제거 불필요 C 0.35%이상, 12mm이상 ········ (590~680) 저온사용목적의 특수킬드강 ······ (590~680)	1
(탄소몰리브덴강) C 0.20%미만	2 3~2
(탄소몰리브덴강) C 0.20%미만	2 3~2
(크롬몰리브덴강)	
Cr 2%, Mo 0.5%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2 3 3
(크롬스테인리스강)	
AIS1 410 및 430형 ······· (775~800) AISI 405, 19mm미만 ····· 보통, 응력제거 불필요	2 8. –
(크롬니켈스테인리스강) AISI 304, 321, 347, 19mm 미만 ·········· 보통, 응력제거 불필요AISI 316, 19mm이상 ······· 815 AISI 309, 310, 19mm이상 ····· 870	2 2 2
(이종재료의 이음)	
Cr-Mo 강과 탄소강 또는 C-Mo강 ········ 730~760         AISI 410, 430 및 기타 강종류 ····· 730~760         Cr-Ni 스테인리스강 및 기타 강종류 ··· Cr-Ni스테인리스강에 접합되는 강에 필요한 응력제거	3 - 3

M - 113 - 2012

- (3) 용접 도중에 예열온도 150℃ 혹은 지정된 용접절차서에 의해 규정된 온도 보다 높은 온도로 유지하여야 한다.
- (4) 열처리 구간의 크기 및 형태를 감안하여 최소 2개의 열전도계(Thermo-couple)를 사용하여 후열처리 온도를 측정하여야 한다.
- (5) 국부 용접 후열처리할 때의 유지온도 및 유지시간은 〈표 2〉와 같다.
- (가) 몸체의 둘레 이음에서는 용접 금속부의 양끝에서 각각 판두께의 3배(관에서는 2배) 이상의 이음 둘레를 후열처리 범위로 한다.
- (나) 노즐 또는 부착물의 이음은 용접부에서 판두께의 6배 이상의 용기 전체 둘레를 후열처리 범위로 한다.

모재의 구분	최저 유지 온도(℃)	용접부의 두께에 대한 최소 유지 시간(h)		
		T≤50	50 ⟨T≤125	T≥125
P-1	595	<u>T</u> 25	$2 + \frac{1}{4}$	$\times \frac{T-50}{25}$
P-3	595	<u>T</u> 25	$2 + \frac{1}{4}$	$\times \frac{T-50}{25}$
P-4	595	,	T	$5 + \frac{1}{4} \times \frac{T - 125}{25}$
P-5	393	$\frac{T}{25}$		$5 + \frac{4}{4} \times \frac{25}{}$
P-6	680	<u>T</u> 25	2 1	$\times \frac{T-50}{25}$
P-7	770	25		25
P-9A	595		<u>T</u>	$5 + \frac{1}{4} \times \frac{T - 125}{25}$
P-9B	J3J	2	$\frac{3}{4} - \frac{25}{25}$	
P-11A	550~585		<u>T</u> 25	

<표 2> 용접 후열처리의 온도와 시간

# 7. 용접부위의 결함 수정절차

#### 7.1 용접수정 최대범위

용접수정이 가능한 깊이는 10mm 이하 또는 자재 두께의 10% 이하 중 적은 것이하이고 개별면적이 6,450mm 이하이어야 한다.

M - 113 - 2012

#### 7.2 결함의 수정방법

- (1) 기공 또는 슬래그가 혼재할 때는 그 부분을 연마 또는 가우징하고 다시 용접한다.
- (2) 언더컷이 생겼을 때는 직경이 작은 용접봉으로 용접하고, 오버랩이 생겼을 때는 그 부분을 깎아내고 다시 용접한다.
- (3) 균열일 때는 균열 끝에 구멍을 뚫은 스톱홀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 부근의 용접부도 홈을 만들어 다시 용접한다.

#### 7.3 수정용접 절차

용접절차와 용접사 검정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코드 요구사항과 아래의 추가 요구사항에 만족하여야 한다.

- (1) 수정할 부분은 기록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용접준비를 하고 예열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2) 용착금속은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 피복금속아크용접법에 의한 용접을 실시하고, 최대 비드폭이 용접봉 심 직경의 4배이어야 한다.
- (3) 저수소계 용접봉은 건조시켜야 하며 다음의 주의사항이 요구된다.
- (가) 모든 용접봉은 사용하기 전에 427°C±14°C의 온도에서 30분~1시간동안 건조한다. 용접봉을 건조로에 넣을 때 건조로의 온도는 149°C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 건조로 온도가 260°C 이상일 때 온도의 상승이 시간당 167°C 이하이어야 하고, 260°C 이상의 온도에서 건조지속시간을 포함하여 5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- (나) 용접봉을 건조한 후 그 온도가 66℃ 이하까지 떨어지기 전에 107℃~149℃의 온도범위를 유지시킬 수 있는 휴대용 건조기에 옮겨 담아야 한다.

# M - 113 - 2012

- (다) 건조기 외부로 일단 불출된 후 회수되는 용접봉은 휴대용 건조기에 담아 상기 (가)항의 주어진 온도에서 재 불출하기 전까지 8시간 이상 건조시켜야 한다.
- (라) 원칙적으로 용접봉을 1회 이상 재건조해서는 안되지만, 만일 2회 이상 재건조를 한 후 용접봉을 시험하여 모든 요구사양을 만족하면 예외로 한다.
- (4) 용접중 용접부위는 최소 177℃의 온도로 예열하고 유지되어야 하며, 최대 층간온도는 232℃이어야 한다.
- (5) 용착금속의 초층은 용접봉 최대직경 3.2mm를 사용하여 그 부분을 완전히 용착시켜야 하고, 대개 초층의 1/2은 후속층의 용착 전에 그라인더로 제거하여야 하며, 최대직경 4.0mm의 용접봉으로 전 용접비드와 열영향 부위의 불림(Tempering)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용착시켜야 한다.
- (6) 규정된 용접전류와 전압범위 내에서 열입력이 관리되어야 한다.
- (7) 용접 수정작업 후 그 용접부분은 최소 2시간 동안 204~260℃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8) 용접 수정작업은 검사자의 입회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.

#### 7.4 수정용접부의 시험

완성된 용접부분은 요구되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최종층의 표면이 매끄럽게 연마되어야 한다. 용접 완료 후 그 용접물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시간인 최소 48시간이 경과한 후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 용접 수정한 부분에 대한 비파괴시험의 상세 판정기준은 KS에 따른다.

#### 8. 클래딩 부위의 결함 수정절차

최종 열처리를 실시한 후 P-NO. 1(일반탄소강)과 P-NO. 3(저합금강) 자재에 P-NO. 8(고합금강) 자재를 클래딩한 부위는 용접 후열처리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실용적이지 못하므로, 아래의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용접 후열처리 작업을 하지 않고 용접 수정작업을 할 수 있다.

#### 8.1 수정의 최대범위

클래딩재에서 수정할 부분의 깊이가 2.4mm 또는 모재 두께의 10% 중 작은 것 보다 크지 않아야 하며 개별면적도 6.450mm 이하이어야 한다.

#### 8.2 수정용접 절차

용접절차와 용접사 검정은 KS 요구사항을 따라야 하고, 용접절차 사양에는 아래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(1) P-NO. 8의 클래딩에 대하여 A-NO. 8의 용착금속, P-NO. 8 또는 P-NO.43의 클래딩에 대하여 F-NO. 43의 용착금속을 사용하여 수정하여야한다.
- (2) 피복금속아크용접법 공정으로서 비드폭이 용접봉 심 직경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용접으로 하여야 한다.
- (3) 용접중 그 용접부위가 최소 177℃ 온도에서 예열되어 유지되며 최대 층간 온도가 232℃이어야 한다.
- (4) 용착금속의 전 부분을 2.4mm의 용접봉을 사용하여 초층을 형성시키고, 다음 층을 3.2mm의 용접봉을 사용하여 용접한다. 초층의 일부를 연마하여 제거하고 층간 용착금속의 제거 내용은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.
- (5) 규정된 용접전류, 전압과 용접속도의 범위내에서 열입력이 관리되어야 한다.
- (6) 용접 완료 후 용접부분은 204~260℃의 온도에서 최소 1시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.

## 9. 수정용접의 기록

용접을 수정한 치수와 위치를 포함한 모든 기록들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# 10. 최고허용압력의 재평가

온도등급 혹은 최고허용압력을 변경함으로써 압력용기의 등급을 재평가하는 것은 다음의 모든 요구조건들이 만족되어진 후에만 가능하다.

- (1) 최근의 검사보고서가 압력용기의 운전조건을 만족하며 주어진 부식 여유가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한다.
- (2) 압력용기는 가끔 새로운 서비스 조건에 따라 내압시험이 수행되거나 혹은 내압시험 대신 특수 비파괴 시험기술에 의해 용기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한다.
- (3) 내압시험 등급이 검사자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. 압력용기 등급의 재평가는 이름판을 추가로 부착하거나 다음의 정보를 추가로 스탬핑한 것을 검사자가 감독한 경우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.

보수책임자 \_\_\_\_\_\_ kgf/cm²G 최고허용압력 \_\_\_\_\_\_ kgf/cm²G 사용온도 \_\_\_\_\_ ℃ 날짜 \_\_\_\_\_

(4) 재평가한 결과는 양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